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95 2020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홍성룡 의원(찬성자 15명)

나. 발의일자 : 2020년 5월 22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라. 상정결과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6월 18일, 상정·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홍성룡 의원)

#### 가. 제안이유

○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위 탁과 예산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8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국가보훈 기본법」, 「문화재보호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기 타 : 해당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가. 제정안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의 유적 발굴이나 보존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협력체계 구 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동 제정조례안은 당초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발의(2020.1.31.)되었으나,

제정안 내용 중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복지정책실에서 안국역 독립후손 기록 전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독립운동 관련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고.

'유적 보존 및 홍보'와 관련하여 문화본부에서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표지물 설치·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1월에 발의한 조례를 철회하고 두 개의 조례로 각각 분리 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20.4.8.) 되고 우리 상임위에는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20.5.29.)되었음.

○ 동 제정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은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으로 유적의 지정 등 범위와 관련하여 국가 지정·등록 문화재까지 유적으로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국가사무로서 자치사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문화재와 현충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각 상위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모두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조례제정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 야 한다.

-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 5. 그 밖에 희생 ·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 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 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 '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 재
  -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 가 제70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

한다.

-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 2. 시 · 도등록문화재: 시 · 도지사가 제70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안 제4조**는 시장이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층위가 두터운 도시이나 일제강점기, 전쟁, 급격한 개발 등으로 역사문화자원의 훼손이심각하며, 역사문화자원의 개별적 보호에 치중하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되지 못해 2천년 왕도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울의 가치를 시민 및 세계인과 공유하고자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제7조1)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sup>1)「</sup>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3조<sup>2)</sup>에 따라 문화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기 보다는 앞서 언급한 두 조례의 기본계획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문화본부 내에는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역사도시서 울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문화재위원회), 「서울 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시사편찬위원회)에 따라 각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sup>3)</sup>에 따르면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는 자문 기능

제7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역사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3. 시민의 권리 보장 및 향유에 관한 사항
- 4. 역사도시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5. 역사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역사도시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 제3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3)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을 안 제4조에 신설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삭제하여 기존 위원 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 수 정 안 >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항일독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u>매</u>	
<u>년 수립하여야 한다.</u>	<u>수립할 수 있다.</u>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일독립운
	동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
	<u>아야 한다.</u>
	1.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u>수립</u>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
	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
	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u>&lt;삭 제&gt;</u>
② (생 략)	
1. ~4. (생 략)	
③ (생 략)	

- **안 제6조**는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역사편찬원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항일독립운동 관련 주제 로 서적 발간 및 기획전시 등을 통해 독립운동 역사현장과 사건을

소개하고 독립운동가 등 인물을 조명함으로써 역사인식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항일독립운동관련 자료 및 전시 현황>

연 번	부서명	자료 및 전시명	내용	비고
1		서울 독립운동 의 역사현장	대한제국기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서울지역 항일독 립운동의 역사현장을 소재지와 관련 사건 소개	'18.8.31.
2	서울역사 편찬원	서울역사총서 제7권 (서울항일독립 운동사)	한말 일제의 침략과 국권수호운동으로부터 일제 치하 독립운동 의 전개와 의열투쟁의 양상을 시기별로 다루고, 교육·경제·사회· 문화예술·종교 분야의 독립운동이 담겨 있음	'09.228
3		1919년 3월1일 그날을 걷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서울역사 답사기	'19.12.20.
4		열도 속의 이리랑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시작된 재일동포들의 도 항, 생활자료, 민족교육, 차별에 대한 저항, 사회각계 의 활약상 등을 전시	'12.8.10. ~10.7.
5	서울역사 박물관	우당 6형제의 독립운동 - 민국의 길, 자유의 길	광복 72주년을 맞아 서울의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화 영 6형제의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전시	'17.8.4.~ 10.15
6		서울과 평양의 3·1운동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과 평양의 3·1운동 소개	'19.3.1.~ 6.9.

-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서울시지정문화재는 6건, 국가지정문화재는 18건으로(참고 1) 서울시는 이러한 문화재를 관리·보수·활용을 위해 총 7개 사업에 24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문화재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연번	사업명	예산	
	합계	24,077,117 천원	
1	문화재 긴급보수	155,500천원	
2	시지정문화재 보수	4,250,000천원	
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9,030,170천원	
4	문화재 정기조사	280,000천원	
5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65,000천원	
6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	152,367천원	
7	딜쿠샤 복원 및 활용	144,080천원	

-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항일독립운동 유적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확인한 바, 건물이 없고 터만 남아있는 경우나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에 사료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석을 설치하는 등 '독립선언문 배부터'의 역사문화유적지 60건(참고 2)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새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하기 보다는 역사문화재과와 서울역사편찬원 등 실국에서 하고 있는 기존사업을 활용하는 것이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라.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을 관계법령으로 발의되었으며, 「국 가보훈 기본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 신을 선양하여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희생·공헌자'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훈선양 사업 및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들도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현충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향후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 문화재인지 현충시설인지에 따라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천년 왕도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서울이 가진 역사 문화자원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항일독 립운동과 관련하여 이미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타 자치단체 에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참고 3)되어 있고.

동 제정안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내용과 형식에 큰 흠결이 없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문화본부에서는 항일 독립운동 유적 뿐 아니라 서울시 소재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 건물 등은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등록) 및 표석·안내판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등록)을 추진할 수 있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를 근거로 각각의 사업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어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중인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하여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 8. 수정안의 요지
  -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 설치하고자 하는 자문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본부 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함.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1495 2020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수정이유

-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 설치하고자 하는 자문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본부 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골자

-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안 제4조).
-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자문위원회 설치를 삭제함(안 제5조).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 제3항에 신설하여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5조를 삭제한다.

## 〈 수정안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항일독립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u>매년 수립</u>	<u>수립할 수</u>
하여야 한다.	있다.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u>〈신 설〉</u>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일독립운동 관
	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
	<u>다.</u>
	1.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u>수립</u>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
	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u>〈삭 제〉</u>
② (생략)	
1. ~4. (생 략)	
③ (생 략)	

##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가치의 계승·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전에 일제의 민족차별, 국권침탈 등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서울특별시 내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4. 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 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일독립운 동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자료 수집·연구
  - 2.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안내판 및 표지석 설치
  - 3.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 4.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위탁)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